

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중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6년 12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12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전국 경향각지의 비디오물 감상실업, 단란주점등 신종업소의 증가에 따라 이들 업소에서 대·소화재가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어
- 이들 업소에 대하여 화재발생 요인이 많으며 화재발생시 대형화 요인이 많은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금지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격감시키고자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종전에 호텔, 시장, 백화점, 유흥음식점, 지하의 위생접객업, 지하의식품 접객업, 소극장,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사용금지하던 이동식 난로 금지 업소를 비디오물 감상실업, 단란주점까지 확대하는 것임.
- 벌칙 :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43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다중 이용시설 신종업소에서 대·소화재의 급증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하여 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금지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격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현재 액체 또는 기체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 업소를 다중이용 시설물인 호텔, 시장, 백화점, 상가, 유흥음식점, 지하의 위생접객업 및 식품접객업, 소극장, 노래연습장 외에 "비디오물 감상실업, 단란주점" 까지 확대 실시하는 내용으로서

본 개정 조례안은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 업소를 확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승인하여 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첨 부

-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중 개정조례(안) 1부